

2023년도 제25회
한국법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법교육과 교사 전문성

2023.11.25. Sat. 14:00~17:00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10-1동 103호

주최 한국법교육학회



학술대회 세부 일정

일 시		행사내용	사회		
등록 및 개회	13:30~	❖ 등록			
	14:00				
	14:00~	❖ 개회식			
	14:20	❖ 학회장 인사			
논문상 시상	14:20~	❖ 법교육 논문상 시상			
	14:40				
연구윤리교육	14:40~	❖ 연구윤리교육			
	15:00				
휴식					
Session 1	15:10~ 16:50	제1발표: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법교육 실행 경험에 관한 연구 - 발표자: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전진현(신관중학교 교사) - 토론자: 이수경(자양고등학교 교사)	이윤주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2발표: 법교육 교사 양성시스템 돌아보기: 사범대 양성과정 및 관련 인식 분석 - 발표자: 송성민(강원대학교 교수), 서지수(도봉고등학교 교사), 이승현(원통고등학교 교사), 지미성(홍천중학교 교사) - 토론자: 최호동(경북대학교 교수)			
총 회					
폐 회					

목차

I .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법교육 실행 경험에 관한 연구	1
발표자: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전진현(신관중학교 교사)	
토론자: 이수경(자양고등학교 교사)	
II . 제2발표: 법교육 교사 양성시스템 돌아보기: 사범대 양성과정 및 관련 인식 분석	31
발표자: 송성민(강원대학교 교수), 서지수(도봉고등학교 교사)	
이승현(원통고등학교 교사), 지미성(홍천중학교 교사)	
토론자: 최호동(경북대학교 교수)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법교육 실행 경험에 관한 연구

전진현(신관중학교)·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관한 기존 논의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 2.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 IV. 분석 결과
 - 1. 법교육 수업 관련 경험
 - 2.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
 - 3. 법교육 교사 전문성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법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는 불의에 저항하며 사회의 평화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한다(박성혁 외, 2013, 14). 사회의 운영 원리인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을 활용하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법은 독자적으로 생성·유지·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활용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박성혁·옹진환, 2007, 49). 민주사회에서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법교육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社会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8년에는 법교육지 원법이 제정되었고, 법무부에서 법 체험 및 법 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솔로몬 로파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법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교

육을 운영, 실시하는 여러 기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때,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수업 방법을 구안하여 이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김순희, 2008, 74).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사이다.

학계에서도 법교육 실천에 있어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여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 실천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김영도, 2006; 박성혁·배화순, 2009; 이대성, 2009, 2012; 임경수, 2012; 최윤진·김윤나, 2006) 법교육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김정윤·박성혁, 2020; 이수진·박성혁, 2015)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예비·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수업을 실행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장에서 법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직면하게 되는 고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학계에서의 학술적 논의가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이식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법교육을 실행한 경험과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관한 기존 논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좋은 수업은 준비된 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법체계를 이해하도록,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에서 법영역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가 법교육 수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

행할 때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법교육 교사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법교육 교사 전문성의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대성(2009, 2012)은 학생들의 법의식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법교육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교육 교사가 갖춰야 할 수업 전문성으로 법교육 교사로서 자신만의 교과관 정립, 학생의 개별적이고 전체적인 특성 파악, 법학 및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평가에 관한 지식, 자신이 속한 학교와 학급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실천을 제시하였다(〈표 1〉 참조). 한편, 임경수(2012)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영역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고 보고,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 구성 요소를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과정 구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대성(2009, 2012)과 임경수(2012) 연구의 공통점은 교사의 전문성을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찾았다는 데 있다. 교육과정 운영이란 교사가 ‘교육 내용 인식(교육과정 이해 및 해석) → 교수·학습자료 구성 → 교육과정 실천 → 교육 평가 →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은 교사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동시에 전문성에 따른 책무이다(김정호, 2006; 이대성 2009, 2012; 임경수, 2012). 이는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강하게 발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대한 이해가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한 논의에 필수적임을 드러낸다.

〈표 1〉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구성 요소

영역	주제	구성요소
교사의 법교육관	1. 법지식 중심의 법교육	법체계 습득 실정법 전달 및 전수
	2. 법적 사고력 중심의 법교육	법실증주의에 의한 법인식논리 법실용주의에 의한 법인식논리
	3. 법적 가치 중심의 법교육	법적 가치 주입(준법교육) 법적 가치 분석(가치 판단 능력)
학습자의 이해	1. 학습자의 법의식발달론 이해	학습자의 인지발달론 이해 학습자의 법의식 발달론 이해
	2. 법개념의 발달 과정과 학습자의 특성 이해	법개념의 발달 과정의 이해 학습유형, 오개념이나 오류 형성

영역	주제	구성요소
법교육 내용 의 이해	1. 법 내용	법학 이론 체계
		실정법
		법교육 목표
	2. 법교육 내용	법교육 내용 체계
		관련 타과목의 내용 요소
		국민의 법문화
	3. 법 현상	법적 사회 문제 상황
		법현상의 국제비교
법교육 방법 론의 이해	1. 교수·학습 자료	교과서 활용
		보조 자료 개발 및 활용
	2. 교수·학습 기법	목표-내용-방법의 연계
		유형별 교수 기법
	3. 학습자	학습자의 동기유발 기제
		학습자의 인지발달 정도
법교육 평가 의 이해	1. 평가의 원칙	평가 목표별 내용 선정
		목표-내용-평가의 정합성
	2. 평가 방법	다양한 평가 기법
		공정한 채점
	3.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 해석
		결과의 학습 피드백
법교육 프로 그램의 적용	1. 현 프로그램 비평	비평의 기준 설정
		내용·방법의 문제점 분석
	2. 신 프로그램 창안	프로그램 체계 구축
		내용 선정 및 실천계획

* 출처: 이대성, 2009, p. 160

그러나 법교육 교사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과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법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이 필요하고(박성혁·배화순, 2009; 이대성, 2009, 임경수, 2012), 교원양성대학에서 법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임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박성혁·배화순, 2009; 이대성, 2009, 임경수, 2012),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이대성, 2009)는 내용이 주요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예비·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법교육을 실천하는 초·중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법교육 실천 주체인 교사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최윤진·김윤나(2006)는 법교육 직무연수에 참여한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법교육의 중요성, 청소년들의 법교육 수준, 법교육의 목표, 내용, 지도 방법, 운영방안 및 이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 내용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요구 사항이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들의 법교육 실행 경험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여 법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법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경험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법교육 수업 경험이 어느 정도 확보된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직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를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법교육 관련 교재 또는 교과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거나 법관련 동아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등 법교육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로 3명, 총 9명의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교직 경력은 5년 이상 16년 미만이었고, 근무지역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징

번호	이름	학교급	교직 경력	근무지역	법교육 관련 활동
1	A	초등학교	15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교육 교재 집필
2	B	초등학교	7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교재 집필

번호	이름	학교급	교직 경력	근무지역	법교육 관련 활동
3	C	초등학교	5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교과서 집필 • 법교육 교재 집필
4	D	중학교	15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동아리 운영
5	E	중학교	10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교과서 집필
6	F	중학교	6년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동아리 운영
7	G	고등학교	14년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동아리 운영
8	H	고등학교	15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교육 교재 집필 • 법 동아리 운영
9	I	고등학교	15년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문항 출제

2.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법교육 실행 경험을 파악하고, 이들의 법교육관 및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면담 도구로 개발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놓인 교육 환경적 맥락 속에서 법교육 교수자로서의 신념과 태도, 요구를 규명하기 위해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질문의 적절성에 대하여 법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1인의 검토를 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된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2023년 10월 18일~2023년 10월 24일 사이에 학교급별로 집단을 나누어 각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면담내용을 녹취하고 연구진은 현장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다. 면담 녹취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개방 코딩을 하였고, 연구노트와 함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 면담 질문지의 구성

주제	질문 내용
자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경력 • 법교육 관련 경력
법교육 수업 관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교육 수업 계획, 운영시 중점을 두는 부분 및 자주 활용하는 수업 방법이나 자료

주제	질문 내용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실행해 온 법교육 수업에서 가장 잘 운영된 수업의 사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측면에서의 특징 및 잘 운영된 이유 그동안 실행해 온 법교육 수업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수업의 사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측면에서의 특징 및 잘 운영되지 않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의 내용 요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외에 추가/강조하거나 축소/삭제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강조되어야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의 유형과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이러한 교수 학습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법교육 교사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 계획, 운영 시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 담당 교사로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및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 교사 전문성의 핵심과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육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

IV. 분석 결과

1. 법교육 수업 관련 경험

1) 지향 : 학생들의 흥미, 삶과의 연계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급에 관계 없이 법교육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가장 중점에 두는 것으로 법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법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꼽았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서 다루는 법관련 내용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법관련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을 잘 아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G교사).

수업할 때 내용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애들의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중점은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법이 너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큰 사고를 치지 않는다 해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나중에 집도 사고 이런 걸 하고 하려면 다 어디에나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게 정말 잘 알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걸 몰라서 못했다라는 걸 아무것도 그게 뭔가 누가 봐준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G교사)

2) 노력 : 다양한 사례의 활용 및 학생 참여 유도

법교육의 지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 속에서 실제 교사들의 법교육 실천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법을 연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경험에서 사례를 추출하거나,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법한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수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거나 분석, 토의·토론하는 활동식 수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A, H교사). 일부 교사의 경우 법관련 쟁점을 교실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는데, 이는 논쟁적인 사안을 교실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하였다(G교사).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수업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학생들이 실제로 조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 다음 소단원에서 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이때 본인이 조사했던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된 법안을 찾거나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해결 방안을 더해서 조사해서 또래 교수법으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 A교사)

인권과 혐오 표현을 관련지어서 수업을 했었는데.. 애들이 공감할 만한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끄집어냈더니.. 그전에는 막 약간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거 막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물론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나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후략… (초등학교, B교사)

쟁점이 되는 부분을 또 핫한 걸 다루는 게 훨씬 더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뻔한 주제를 다루게 되면 저도 예전에 영화 같이 보고 사형제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토론도 하고 했지만 약간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게 뭔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민감하지만 더 흥미를 끌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은 점이 있다 (고등학교, G교사)

2.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

1) 법교육의 목표

연구 참여자들은 법교육의 목표에 해당하는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영역을 각각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였다. <표 4>에서 <표 6>은 법교육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순으로 응답자들이 답한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으로 가중치를 두어 순위를 제시한 것이다.

① 지식적 측면

연구 참여자들은 지식적 측면에서 법교육의 목표로 ‘법과 규범의 의미와 필요성’,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역사, 의미, 종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통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점은 고등학교 교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초·중학교 교사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4> 학교급별 교사들이 인식하는 법교육의 목표(지식적 측면)

순위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1	법과 규범의 의미와 필요성, 기능에 대한 이해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역사, 의미, 종류 등)	법과 규범의 의미와 필요성, 기능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순위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다양한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2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역사, 의미, 종류 등)	법과 규범의 의미와 필요성, 기능에 대한 이해	-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입헌주의에 기반한 국가 기관에 대한 이해(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역사, 의미, 종류 등)

② 기능적 측면

연구 참여자들은 기능적 측면에서 법교육의 목표로 ‘법적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를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점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법적 개념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기(2위)’의 중요성을 초·중학교 교사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표 4>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법교육의 지식 영역에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초·중학교 교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급별 교사들이 인식하는 법교육의 목표(기능적 측면)

순위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1	법적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법적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기
2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법적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기	법적 개념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법적인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3	-	법적인 문제 상황을 비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순위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적으로 분석하기	의사소통하기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③ 가치 및 태도 측면

연구 참여자들은 가치 및 태도 측면에서 법교육의 목표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인권 의식 함양’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밖에 ‘자신의 가치 및 태도의 명료화’,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를 통한 권리 행사와 책임의식’ 등도 중요한 가치 및 태도 영역이라 응답하였다.

〈표 6〉 학교급별 교사들이 인식하는 법교육의 목표(가치 및 태도 측면)

순위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1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인권 의식 함양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인권 의식 함양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인권 의식 함양
2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 존 중	자신의 가치 및 태도의 명료화	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 및 존중(준법의식)
3	자신의 가치 및 태도의 명료화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를 통한 권리 행사와 책임의식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를 통한 권리 행사와 책임의식

2) 법교육의 내용

(1) 사회과 교육과정 내 법교육 내용 요소에 대한 의견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 요소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여러 내용 요소 중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축소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응답은 학교급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 대부분은 ‘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는 법의 의미와 기능, 역할, 법과 관련된 이념 등을 의미한다. 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학교급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 법교육의 규범 교육적 측면을 언급하며 법의 의미와 기능을 강조해서 다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은

법과 관련하여 학습한 지식의 의미는 결국 법의 의미와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법적 쟁점을 토론할 때 정의와 법적 안정성 등과 같은 법의 이념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들은 ‘국가 기관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중학교 교사들은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러한 응답이 국가 기관의 구성이나 재판 과정을 각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해당 개념을 학습할 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식이 등장하여 더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더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법이란 무엇인가 이게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기본권과 의무가 우리 생활에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빼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A교사)

재판 과정을 가르칠 때마다 애들이 그걸 암기하려고만 하고 왜 그런 재판을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원고와 피고를 떠나서 사람들의 인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가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왜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E교사)

(2) 내용 요소의 재구성 방안 제안

내용 요소를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학교급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공통으로 내용 요소를 학습할 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법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가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고 학생이 일상생활과 법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돋는 법적 분쟁 상황 예시가 교과서에서 더 많이 더 다뤄지길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법교육의 내용 요소를 당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헌법재판소 판례와 같이 가치 충돌이 잘 드러나는 판례를 단순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등 법교육에서 당위적인 내용보다는 가치 충돌 사례들을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교과서에서 이게 법이고 답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쟁

점이 서로 충돌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C교사)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들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보다는 의미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강조해서 다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정치, 사회·문화, 경제, 지리 영역을 가르칠 때보다 법 영역을 가르칠 때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내용을 재구성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영역보다 법 영역의 내용 요소가 많아 재구성을 적게 하게 된다고 응답한 교사도 있었다. 교사의 법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너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식들 보다는 그 의미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보다 강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재산 관계와 법, 가족 관계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를 학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그 수단으로써 재산 관계와 법, 가족 관계와 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D교사)

지리 부분이라든지 경제나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거의 교과서랑 유사하게 학습지를 구성하는 편인데 법 영역은 거의 다 재구조화를 해서 (구성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중학교, D교사)

자료를 딜 찾게 되는 게 법 단원인 거 같아요. 위낙 내용 요소가 많아서 이것만 가르치기에도 바빠서 사실 다른 단원 할 때는 여기저기 자료도 가져다가 아이들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중학교, E교사)

고등학교 교사들은 법교육의 내용 요소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법 지식의 학습이 필요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 등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제법의 내용이 국제 관계의 변화와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제는 국제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을 과거에 이제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매우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몇 번 졸업한 친구들이 이야기해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을 때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중략… 그래서 필요하지만 이걸 꼭 다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나중에 관심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정치와 법 교육과정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고등학교, I교사)

법 관련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그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판례를 검색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장 되게 많은 정보의 질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의외로 아이들이 어떤 학교 폭력이나 인터넷에서 댓글을 잘못 달고 혼자 되게 고민하다가 꿩꿍대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중략… 요즘에 플랫폼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로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어떻게 받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절차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고등학교, H교사)

진짜 국제법과 관련된 어떤 쟁점을 다룬다거나 이거보다는 국제기구가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냉전 시대에 탈냉전으로 가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다, 그 다음에 국제법에 법원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것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물론 그 이유는 알겠지만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국제법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고등학교, G교사)

연구 참여자들은 법교육의 내용 요소의 학습을 통해 법규범에 대한 존중과 자기중심적인 권리 의식에서의 탈피하고,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해 시민으로서 노력하는 태도 함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실 요즘에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불완전할 수는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다 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규에 대한 존중이 저는 도덕적인 느낌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계속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H교사)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개인의 노력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 기본권 제한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인권 및 권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에 우선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권리 의식이 강하여 학교에서 타인과 갈등을 빚은 후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개정이 필요하나 법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산출되는 것이며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해 시민으로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F교사)

3) 법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참여자들은 법교육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접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형태의 수업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적고 깊게 공부하는 과정에서(H교사)’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법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수업으로 주로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시뮬레이션 수업, 모의법정, 논쟁 학습 등을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과 비교했을 때 교사들이 응답한 수업 방법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활동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응답한 수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통으로 시간 부족의 문제와 학생들이 수업 방법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문제로 언급하였다. 먼저, 시간 부족의 문제는 초등학교급의 경우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운영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사회 교과는 전담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전담 교과로 배정되는 영어, 체육 등을 제외한 전 과목을 담임 교사가 가르치는 상황에서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활동 수업은 이루어지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중학교급에서는 법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사회과에 배정된 시간이 적고, 블록 수업이 어렵기에 활동이 단절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하거나 학기말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고등학교급에서도 입시와 평가에 대한 부담으

로 인해 진도를 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활동 중심의 수업을 따라오기 어려워하는 문제는 초등학교 면담에서 자주 등장하였고, 고등학교 면담에서도 언급되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수업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중략…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질문 중심이나 탐구 수업을 했을 때 한 학기를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과를 여러 반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초등에서 그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를 제가 전달을 해서 여러 반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한 학기 동안 그냥 질문 중심 수업으로 쭉 이끌어가는 탐구 수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훈련이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B교사)

하지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쓰더라도 사실은 학생들이 그 방법에 좀 익숙해지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시뮬레이션 수업을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처음이랑 나중에 보면 학생들이 좀 확실히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후략… (초등학교, C교사)

토의 토론이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도 나가기 바쁜 시간의 부족 문제, 학생들이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논의를 하려면 그와 관련된 지식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교사가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선행되는 수업을 한 뒤에 해당 토론이 가능한 면도 큽니다(고등학교, G교사).

4) 법교육의 평가 방법

연구 참여자들은 법교육의 평가 방법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지필 평가와 법적 추론과 판단력, 문제 해결력, 가치관 정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언급하였다. 지필 평가는 초·중등 교사들이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행 평가의 예로는 초·중등 공통으로 논술형 평가에 관한 호응이 높았고, 구술 평가 및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하는 관찰 평가를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수행 평가로 응답한 평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공통으로 수행평가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이 또한 학생들의 활동 위주의 수업이 갖는 시간적 부담과 같은 맥락의 대답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를 가르치려면 30시간이 필요한데 실제 사회과에 배정된 시수가 30시간이라면 특정 개념을 활동 수업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을 가르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꺼리게 되고, 이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연결된다. 수업과 평가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고등학교급에서는 지필 평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수행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급에서는 주로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수행 평가를 운영하고, 고등학교급에서는 지필 평가를 1회만 계획했을 때 수행 평가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논술형 수행평가는 자유학기제에서는 유용하지만 통상적인 교육과정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시간 문제도 있고 평가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유학기제에서는 유용합니다. (중학교, F교사)

1학기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간적 압박을 느끼기는 하지만, 지필 평가를 1번만 보기 때문에, 수행평가 등을 통해 수업 과정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I교사)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공통으로 학생들이 수행 평가를 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점과 교사는 수행 평가를 제작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언급했다. 이러한 의견은 앞서 학생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수업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연결된다.

아이들이 쓰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편이에요. …중략… 제가 주체적으로 우리 반을 이끌어서 몇 달 간 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면 우리 반 아이들 역시 못합니다. 이 정도의 결론만 낼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의미 있게 쓰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 수행평가를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품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결국 평가를 할 준비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B교사)

제가 말씀드린 법교육의 목표를 생각한다면 서논술형 평가 등이 적절한 방법이겠으나, 사실 학생 수준에서 완결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평가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법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역량의 선형 조건인 지식적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필평가를 시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D교사)

학생들의 기본적인 글쓰기 역량이 높지 않다는 점, 읽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에 부담이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논술형 평가가 자치 잘못하면 글쓰기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될까봐(사회과의 성취기준과 무관하게) 조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G교사)

중·고등학교급에서는 수행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제출한 다양한 자료를 아우르며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저도 서논술형 평가로 두 가지 종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중략… 점수화되는 수행평가로 썼는데 채점을 하기가 점수화하기가 진짜 사실 너무 어렵고 (학생이) 나름대로 의견을 적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 기준은 그냥 의견 근거 몇 가지 썼다, 그리고 찬성이라고 했으면 그 논리적인 흐름을 끝까지 그냥 잘 유지를 했다, 말 안 되는 내용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쓰지 않고 몇 줄 이상 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형식적인 걸로만 채점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읽고 그냥 혹시나 그냥 생기부(생활기록부) 잘 쓴 애들은 좀 더 적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했지 …중략… 그래서 학습 경험으로서 효과가 있지만 점수화하는 평가로는 저도 어떤 방법이 진짜 애네들의 사고력을 측정을 점수화를 시킬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D교사)

한 학기에 1회 정도 수행평가로 활용하고 있으나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논술형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있어 평가 요소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G교사)

3. 법교육 교사 전문성

1)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 : 학교급별 차이

면담 결과, 법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법 지식은 법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라도 내용만 보고 가르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사회에 있는 여러 단원 중 아이들이 법 단원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법을 재밌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을 아는 교사가 전문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E교사)

추상적인 개념 혹은 구체적인 절차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고 학생들이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다양한 사례와 수업 도구 활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지식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H교사)

하지만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쉽게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수업설계 및 운영 능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A, E교사). 반면, 선택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 I교사).

교사가 학습자 수준과 배경을 파악을 해서 그에 적합한 다양한 예시를 좀 들어주고 이거를 모의수업 등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습자가 법을 이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A교사)

잘 가르치는 거는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거는 학습이야 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배울 때 약간 삶 속에 녹아들듯이 그

렇게 배울 때 정말 잘 된 수업이고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E교사)

다른 과목에 비해 유난히 법은 개념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법적 지식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G교사)

(법교육 담당 교사로서 나의) 약점은 아직도 부족한 법적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의 경우에도 모의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형량 판단을 위해 선고형, 처단형 등 양형에 필요한 세부적 지식이 필요한데,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어려움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I교사)

2)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

① 활용도 높은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의 개발·보급

법교육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의 제공이었다. 그동안 개발, 보급되어 온 자료들은 유사한 주제와 내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식상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사회과 다른 영역이나 타 교과의 자료를 참고한 새로운 자료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현실과 관련된 사례를 다룰 때 교사에게 생길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우려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원칙 정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B교사).

개론서 등에서 법교육 교수학습방법으로 언급되는 방법들은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평이 많았다. 예를 들어, 법교육의 대표적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모의재판의 경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와 실행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실제로 교실에서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C, E, I교사). 또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거나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자료 역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만한 시의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많은 교사들이 현실의 법문제와 수업을 연계하는데 판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적절한 판례를 수집하여 재구조화하는데 너무 많은 품이 들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자료가 너무 없어요. 다른 주제에 비해서도 너무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나오는 주제 나오는 내용들 너무 뻔하고 해서 새로운 주제나 문제를 적용한 수업 자료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수업 자료를 개발하기 이전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법 관련된 내용은 너무 지나치게 현실의 사례를 다루면 이게 또 뭔가 문제의 요소가 된다거나 민원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원칙 교수학습의 원칙을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개론서에 나오는 것처럼.. 토론 수업 무슨 수업 이렇게 하면은 다 의미없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B교사)

특히 법 영역이 저는 굉장히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추상적인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이제 사례를 많이 쓰는데 그 사례를 쓸 때 판례를 이용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판례를 찾아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판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는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적시성이 떨어지고 좀 옛날 사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최신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인터넷에 자료는 많지만 이게 진짜로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정말 맞는 자료인지 확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썼던 사례만 계속 쓰게 되고 그 썼던 사례가 굉장히 구식이어서 리뉴얼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어요. (중학교, F교사)

또한 많은 면담 참여자들이 법교육에서 토의토론, 서논술, 프로젝트 활동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특히 법교육의 지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법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기능이나 가치·태도의 함양을 확인하는 데는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또한 법관련 내용이 심화되는 고등학교급에서는 평가 문항 출제에서의 오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었다. 복잡한 법관련 사안을 평가 문항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지식적인 이해를 나아가서 역량, 기능 이런 결로까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지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애들이 실제로 그런 역량이나 능력을 기르게 되었는지도 평가를 지금은 잘은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중학

교, D교사)

법 단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내기에 너무 좋은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딱딱 떨어지고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해하고 외웠으면은 딱 떨어지는 답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단원에서는 수행평가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는 시험에 낼 거 많아 해가지고 주로 지필평가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근데 이 지필 평가는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라서 가치 태도 측면이라든지 기능 측면에서는 법 관련해서 제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구나 (중학교, E교사)

법 문항도 사실은 출제할 때 지문에서 잘못 표현이 서술되면 이게 판례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평가 전문성을 함양하는 걸 원한다는 걸 저는 되게 느꼈고.. (고등학교, H교사)

②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연수 운영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법교육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사 연수가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다양한 법적 사례와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른 교사들이 실천한 우수 사례에 대해 공유받기를 희망하였다. 상대적으로 엄밀한 법적 지식의 중요성이 높은 고등학교급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나타났다.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교대나 사대의 교육과정의 개선보다는 보수 교육을 통한 해결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예비교사 교육과정을 통해 법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우수 사례나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수가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사회과의 타 영역에 비해 법교육 관련 연수가 많지 않고, 그 내용도 주로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존의 연수 중에서는 현법재판소 현법재판연구원에서 실행하는 연수를 이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학교급별로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은 지나치게 법적 지식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C, E교사), 고등학교 교사들은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I교사). 이는 정형화된 기존의 연수에서 벗어나 학교급별, 교사별 요구를 파악한 세분화된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초등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내용적인 지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의 갈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론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수학습 방법 토론 수업 무슨 수업 이렇게 하면은 다 의미없을 것 같고요. 사례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의미 있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B교사)

법 전문가들이 어떤 그런 내용 요소라든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고등학교, H교사)

예전에는 저희가 법교육센터도 있었고 좀 법교육 관련해서 연수도 그래도 꾸준하게 거기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어느 순간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솔로몬 로파크는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공문도 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고 법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랑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이렇게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법교육 연수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교육하면 여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연수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게 경제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하고 금융감독원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KDI의 연수가 경제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장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연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교육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I교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교사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진짜 헌법재판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것만 엄청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연구원분들이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들 다 반응이 우리는 약간 교수학습 자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초등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방법적인 측면의 요구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C교사)

현재에서 진행했던 헌법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였었거든요. 약간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도 헌법 교육을 하는데 이 정도는 듣고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지식적인 부분을 그냥 교수님들이 나와 가지고 강의하고 너무 재미없고 내가 이걸 왜 들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수업이었어요. 법 교육에 특화된 그런 교수법에 대한 연수가 있을까 .. 그런 게 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중학교, E교사)

법 내용 지식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법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일반 사회 선생님들은 사실은 되게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일반 사회 교사가 됐기 때문에 법과 관련한 내용 지식이 사실 깊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실제 사례, 실제 판례 이런 것들을 변호사나 아니면 검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접근하고 해결했고 이런 게 쟁점이 됐다 이런 것들이 저는 기억에 남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수업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해 실무에서는 이런 말들을 사실은 이렇게 곁들여서 설명할 수 있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I교사)

③ 자료 공유 및 질의응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법교육을 실행하는 선생님들이 개발한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시 중요한 지원 방안으로 언급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많은 선생님들이 역사나 지리와 같은 사회과의 다른 영역에 비해 일반사회, 특히 법영역에서 활용할만한 수업 자료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교사 간 교류도 활발하지 않음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B교사). 이에 다양한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료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단, 이러한 플랫폼은 자칫 오래된 자료들이 단순히 누적되기만 하는 죽어있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플랫폼에 대한 요구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법교육 수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질의사항을 올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소통에 대한 목소리였다(H교사). 사회과의 타 영역에 비해 법 영역은 학생들이 현실과 연계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고, 교사가 수업 내용이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플랫폼 상에 동료 교사 혹은 법률 전문가에게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인적 지원이 구축된다면 법교육 수업에 대한 교사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디스크립션과 같은 곳에 법영역 관련 자료는)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역사나 지리에 비해서 그 자료의 양이 현저히 적어요. 역사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누적된 자료들이 있단 말이죠. (그에 비해 사회과, 법영역은) 좋은 자료가 아예 거의 전무하고.. 이게 좀 누적이 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B교사)

여러 군데에서 영상이나 학습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게 한 곳에 좀 모여 있어가지고 공유를 한다면.. 만든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나 틀 같은 거를 다 가져온다거나 하는 면에서 뭔가 찾는 고생 번거로움 같은 걸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군데서 해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G교사)

교사가 읽었을 때 바로 납득이 바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사례를 설명할 때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최근 사례 위주로 계속 업로드가 되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F교사)

적합한 판례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무료로도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I교사)

선생님들은 즉시 질문을 올리고 즉시 답이 올라 가는 그런 형태의 소통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쭉 올라와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고등학교, H교사)

④ 법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실효성 있는 연수와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함께 언급된 것은 법률 전문가와의 연계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법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법적 지식을 채움으로써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에서의 동료교사와 양질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업 자료나 평가 자료의 오류 가능성은 검토하고 받아 정확성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의 특강이나 법 관련 기관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열리는 3~6시간 분량의 짧은 연수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I교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법률 전문가의 단기 특강 형태의 연수가 열린다면 강사로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와 수

강생으로 참여하는 교사의 접근성을 모두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제가 현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현법 교육 연수를 듣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원격 연수는 참여도도 되게 낮고 반응이 안 좋은데 여기에 되게 참여도 높고 질문도 엄청 많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법과 관련해서 위낙 분야가 광 대하고 전문성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례라든지 그 판례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쉽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게 기본권이잖아요. 그런 기본권의 어떤 개념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그런 지식과 관련된 되게 정말 지루한 전달 연수인데도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지식이라고 판단하니까 집중도도 엄청 높고 반응도 좋은 걸 지금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교육을 희망하는 선생님이라면 이미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있고 근데 임고 공부에서 했던 그런 지식 내용 요소만으로는 수업을 뭔가 완성도를 이렇게 꾸미거나 수행 평가 같은 거를 구성할 때 나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이 어떤 그런 내용 요소라든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H교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법적 지식의 수준에 비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다양한 실제 사안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하고, 교사에게 전문적인 법관 수준의 응답을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직 교사라고 해도 법적 지식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 답변을 하나의 정답처럼 수용하거나 정답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I교사)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모르겠는데 근데 온갖 사례를 다 상상하고 끄집어 와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애들이 그런 걸 잘 수용 못하고 다 질문할 때마다 항상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그거는 나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Q&A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뭔가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 이라도 뭔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 이 예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G교사)

제가 그때 아이들이 있었던 지역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시설을 많이 방문을 했고 모의재판 대회 같은 거를 나갔었는데 그럼 모의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법원에서 보통 판사님을 배정을 해줘서 이제 아이들이 쓴 그런 굉장히 허접스러운 모의재판 원고를 이제 많이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 과정에서 동아리 운영할 때 사실 교사의 역량도 지원하지만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이 충분히 지원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고등학교, H교사)

서울에 있을 때는 근처에 법원이 있어 가지고 내키면 한 번 데려갔다 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지방은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법원 가려면 버스 타고 2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없는 법원을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출장을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 (중학교, F교사)

V. 결론 및 제언

교사는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써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목소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험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법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은 공통으로 학생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고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학교급에 따라 법교육의 실천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급에서는 세부적인 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다른 학교급에서보다 강조하였으며, 중학교급과 고등학교급에서는 수행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나타났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법교육에서 교사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교사의 지원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법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크게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의 개발·보급’,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연수 운영’, ‘자료 공유 및 질의응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법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이었다.

교사들의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데 외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교사 집단 내부에서의 변화 및 해결 노력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교사 간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 발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법교육 담당 교사의 법적 지식의 부족이나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김정윤·박성혁(2020)에 따르면, 학교 안과 밖에서 사회과 교사 간 협력 활동은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교수 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법교육 교사 학습 공동체나 교사 모임을 활성화하여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수업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 집 필한 서적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의 발간 사례는 교사 모임을 통한 법교육 교사 전문성이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법교육 실천 경험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면담하여 법교육 실행 경험을 파악하고,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다만, 면담 대상이 제한적이라 법교육 경험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규모의 설문 조사나 추가적인 심층 면담 조사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법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듣고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은 교사와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는 주체 이므로 학생이 필요로 하고 흥미를 갖는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교육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윤·박성혁(2020). 사회과 교사 간 협력 활동과 법 영역 교수 효능감 연구. *법교육연구*, 15(1), 27-62.
- 김정호(2006). 교사 등 법교육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 방안.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135-152.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 김영도(2006). 사회과 법교육을 위한 국내·외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혁·배화순(2009).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법교육연구*, 4(1), 103-122.
- 이대성(2009). 사회과 법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법교육연구*, 4(1), 155-177.
- _____ (2012). 중등 사회과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분석과 개선 방안: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2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47-163.
- 이수진·박성혁(2015). 법교육 교사의 교사효능감 향상을 위한 법영역 내용교수지식 연구. *법교육연구*, 10(2), 79-105.
- 임경수(2012).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법과 인권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9(2), 53-69.
- 박성혁·김해성·김현철·곽한영·오승호·김자영(2013). *법교육학 입문*. 서울: GMW.
- 박성혁·옹진환(2007). 참여형 법교육의 정당화 근거-Fox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4), 47-66.
- 최윤진·김윤나(2006). 중등학교 법교육 실태조사 연구: 법교육 직무 연수 참여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8(4), 159-187.

법교육 교사 양성시스템 돌아보기

- 사범대학 양성과정 및 관련 인식 분석 -

송성민(강원대학교 교수)

서지수(도봉고등학교 교사)

이승현(원통고등학교 교사)

지미성(홍천중학교 교사)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이론적 배경
 - 1. 사범대학 양성과정의 법교육 관련 선행연구
 - 2. 법교육 교사 전문성 관련 선행연구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방법
 - 2. 자료의 분석
- IV. 전국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현황
- V. 교사의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인식
- VI. 논의 및 제언

I . 들어가며

교육에서 교수(teaching)를 담당하는 주체는 교사이며,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의 질과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정의내리고 이에 대해 접근해 나가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상호 이질적인 면이 있다. 교사 전문성을 교사 효과성으로 간주하거나(McKenzie, 1986; Stanley, 1991), 교과 맥락에 근거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Shulman, 1987; 강대현, 2006). 교사 효과성, 교수법적 내용 지식의 전문성 시각이 지나치게 지식 요소에 치중되어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교실 수업 현장의 실천적 지식 함양에 주안점을 둔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교사 전문성

(Schön, 1983)을 강조하는 입장도 등장했다(차경수·모경환, 2008: 126–139에서 재인용).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전문성 시각은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지향하고, 종합적 예술로서의 접근을 중시한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지식 축적은 전문성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수업 설계, 실행, 성찰, 소통 능력의 종합적 역량이 두루 겸비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이혁규, 2011: 20–27).

교육 전문성, 교사 전문성에 대한 개념 도출의 난맥으로 인해 전문성 신장 방안을 논하는 것 또한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런 양상은 특정 학문, 특정 교과 영역과 결부될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법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사회 교과 영역의 일부로 간주된다. 대체로 사회과 교사들은 법교육 영역에 대한 흥미와 선호가 높은 편인데 사회·문화, 정치 등의 내용 영역에 비해 법 영역에서는 유독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교수·학습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법교육 전문성에 한해 교사들은 다소 모순적으로 비친다. 법 영역이 다른 학문 체계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은 내용 범위를 가지는 데서 기인하는 것일까? 개념과 이론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사례나 판례)에는 또 다른 고차적 사고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일까? 고도로 생활 경험에 밀착된 학문이다보니 소위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

많은 연구자들이 법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 대성(2009)은 법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양성과정, 즉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며(김순희, 2008; 박성혁·배화순, 2009; 전제철, 2010 등), 현직에 있는 기존 교원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연구들도 존재한다(김자영·곽한영, 2009; 이종훈·표현덕, 2018; 임경수, 2012 등). 이상의 연구들이 밝혀낸 성과와 제안한 전문성 신장 방안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법교육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진 못했다.

따라서 법교육 전문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과 교사 양성과정은 그 자체로 법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부터 법교육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법교육 교사 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 교사들의 법교육 실행 경험과 연결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논의 범위를 좁혀 밀도 있는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을 제외한 중등 교사들의 법교육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교육 전문성과 그 신장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망하는 것을 시작으로(Ⅱ장), 본 연구가 수행할 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였다(Ⅲ장). 다음으로 전국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고(Ⅳ장),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면담을 통해 그들이 법교육 전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범대학 양성과정의 경험과 어떻게 연계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Ⅴ장).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교육 교사 양성시스템의 측면에서 법교육 전문성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Ⅵ장).

Ⅱ. 이론적 배경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 그리고 일반 대학의 교직 과정, 교육대학원 등의 통로를 통하여 양성되고 있다. 그중에서 사범대학의 양성과정은 국가가 교사 양성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으로, 여타 교사 양성시스템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박성혁·배화순, 2009: 104). 이러한 점에서 사범대학 양성과정의 예비교사 대상 법교육을 분석하는 것은 교사 양성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개선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1. 사범대학 양성과정의 법교육 관련 선행연구

학생들에게 양질의 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교육을 실행하는 교사가 어떠한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받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사 대상 교육이 하나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중등교사 대상 법교육은 크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양성과정(김순희, 2008; 박성혁·배화순, 2009; 이대성, 2009; 이종훈·표현덕, 2018; 전제철, 2010)과 기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수기관 등의 연수과정(김자영·곽한영, 2009; 이대성, 2009; 이종훈·표현덕, 2018; 임경수, 2012)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범대학 양성과정의 예비교사 대상 법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김순희(2008),

박성혁·배화순(2009) 등의 연구가 있다. 김순희(2008)는 법교육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법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반성적 능력을 강조한 학문적 관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향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안을 제안하였다(김순희, 2008: 83). 사회과 법교육을 위한 교사 대상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사교육 관점의 제 유형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범대학 세 곳의 법 영역 강의의 필수/선택 여부 정도만 분석하고 있어 현행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박성혁·배화순(2009)은 전국 주요 사범대학의 법 영역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예비교사 대상 법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 영역 강의 수 부족, 법 교육 담당 전임 교수의 불충분, 헌법에 치중된 과목 편성, 대학 간 교육과정의 편차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전국 주요 사범대학의 법 영역 강의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그 개선 목적으로서 교사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현행 사범대학 양성과정 및 법교육 실행 주체로서 교사의 인식과는 구체적으로 연결짓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2. 법교육 교사 전문성 관련 선행연구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중등교사 대상 법교육을 논의하는 등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에는 이대성(2009), 이종훈·표현덕(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대성(2009)은 ‘법과 사회’과목의 수능 선택 학생 감소, 학교 교육과정상의 과목 축소 움직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해결을 위해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현행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교원양성대학에 다양한 법교육 관련 강좌 개설, 교원양성대학에서 법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교수 확보, 맞춤 형식의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조하였다(이대성, 2009: 157).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 구성 요소를 정리해보았다는 의의가 있으나,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문서를 중심으로 법교육 관련 강의의 주제, 필수/선택 여부, 법학 관련 전공 교수 유무만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는데 그쳤다. 법 영역 강의의 편성 시기, 주제 및 내용별 편성 순서 등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으며, 해당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들의 실제 법교육 실행 경험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종훈·표현덕(2018)은 법 내용의 복잡성과 방대한 양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법 수업을 실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교육 교사용 강의안 개발하고자 했다. 사범대학 양성과정과 기존 교원 대상 연수 과정의 현황을 모두 살펴보고, 사범대학 법 교육과정의 교양/전공 여부, 필수/선택 여부, 강좌 내용 구분, 교재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있으나, 연구의 목적상 사범대학 양성과정 자체의 개선을 통한 법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이 아닌, 일부 주제에 대한 현장 보급용 강의안 개발을 위한 인식 실태 조사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사범대학 양성과정 및 관련 인식 분석을 통해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사범대학 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 영역 강의의 주제 및 내용, 편성 시기와 편성 순서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계하여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 경험 전반과 학교 현장에서의 법 수업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교육 교사 전문성의 관점에서 사범대학 양성과정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국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첫 번째 영역과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교사 전문성의 관점에서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의 경험에 대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한 두 번째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사회 전공의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총 16개¹⁾의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3년을 기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 문서를 수집하였으며, 편성되어 있는 법 영역 강의 전체를 대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교사가 법교육 교사 전문성의 측면에서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FGI(초점 집단 면담,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FGI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 일대일 면담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명의 연구 대상이 한 집단으로 참여하는 면담 방식이다. 연구 대상은 상호 간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최초 답변으로부터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답변 공유의 과정을 통하여 법교육 교사 전문성과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견해를 이해 및 탐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연구 대상은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하여 ‘법교육 경력이 있는 중등학교 교사’ 중에서 모집하였으며, 소속 학교급, 교직 경력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의 편향을 막고자 고루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총 8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성별	출신 대학	소속 학교	교직 경력	법교육 경력	담당 법 관련 과목
교사 1	여	A 대학	고등학교	1년 8월	1년 8월	정치와 법 통합사회
교사 2	남	A 대학	고등학교	3년 8월	2년 8월	정치와 법
교사 3	남	A 대학	고등학교	5년 8월	5년 8월	법과 정치 정치와 법 사회문제탐구
교사 4	여	B 대학	고등학교	7년 8월	7년 8월	정치와 법
교사 5	여	A 대학	중학교	1년 8월	1년 8월	사회2
교사 6	여	B 대학	중학교	3년 8월	3년 8월	사회1 사회2

1) 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하여, 강원, 경북, 경상, 공주, 대구, 부산, 서울, 서원, 성신여자, 순천, 이화여자, 인하, 전북, 제주, 충북대학교(이상 가나다순)에 사범대학 일반사회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이름	성별	출신 대학	소속 학교	교직 경력	법교육 경력	담당 법 관련 과목
교사 7	남	A 대학	중학교	10년 8월	10년 8월	사회1 사회2
교사 8	남	A 대학	중학교	15년 10월	15년	법과 사회 정치와 법 사회1 사회2

2. 자료의 분석

1) 전국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문서 분석 방법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일반사회 전공의 경우 법학을 포함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의 4가지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그중 본 연구에서는 법교육 교육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현황을 크게 4가지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각 대학별로 편성된 전체 ‘법 영역 강의 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강의들의 ‘학년 및 학기별 편성 시기’를 개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편성한 법 영역 ‘강의의 주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법 영역의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전공 필수 과목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의 주제 및 내용을 바탕으로 ‘학년 및 학기별 편성 순서’를 다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분석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분석 기준

분석 영역	세부 분석 기준	비고
법 영역 강의 수	사범대학에서 편성한 법 영역 강의의 전체 수는 어 떠한가?	
강의 편성 시기	사범대학의 법 영역 강의는 어떤 학년에 처음 편성 되어 있고, 주로 편성된 학년 및 학기별 시기는 언제인가?	
강의 주제 및 내용	사범대학은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법 영역 강의를 구성하였으며, 그중 전공 필수 과목으로 편성한 강의는 무엇인가?	

분석 영역	세부 분석 기준	비고
강의 편성 순서	사범대학은 강의의 주제와 내용을 기준으로 어떠한 순서를 따라 학년 및 학기별로 법 영역 강의를 편성 하였는가?	

2) 교사의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경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현장 교사들이 법교육 교사 전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교육 교사 양성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총 8명의 연구 대상을 4명, 3명씩 두 집단으로 구분해 FGI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1명은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메일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면담은 한 집단 당 1회씩 총 2회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7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추가 면담은 연구자가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한하여 진행하고자 계획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 및 녹화되었다. 이후 녹음 및 녹화 자료는 연구자 본인에 의하여 전사 및 분석되었다.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목록으로 제시된 면담 질문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전반’에 대한 교사의 수강 경험을 확인하고, ‘법교육 전문성의 관점에서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면담 시 제시된 주요 질문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면담 질문 목록

질문 영역	주요 질문	
중등교원 양성 기관의 법 영역 강의 수강 경험	강의 수강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교원 양성 기관 재학 중 총 몇 회의 법 영역 강의를 수강하였습니까? 어떤 주제의 법 영역 강의를 수강하였습니까? 해당 법 영역 강의의 수강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의 전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교원 양성 기관에서 수강한 법 영역 강의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법교육 교사 전문성과	법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현장에서 법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

질문 영역		주요 질문
중등교원 양성 기관의 법교육 교육과정	법교육 내용	<p>각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교원 양성 기관의 법 영역 강의가 그 목표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 • 학교 현장의 법 수업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 중등교원 양성 기관의 법 영역 강의가 해당 평가의 관점을 정립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에서 법 수업을 할 때 아래의 법 내용 영역에 대해 어떤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학개론 / 헌법 / 민법 / 형법 / 기타법(사회법, 행정법 등)] • 중등교원 양성 기관의 법 영역 강의가 해당 중요도 순위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
	법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에서 법 수업을 할 때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합니까? • 중등교원 양성 기관의 법 영역 강의가 해당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 학교 현장의 법 수업에서 주로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상하고 준비합니까? • 중등교원 양성 기관의 법 영역 강의가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교사의 법 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해 중등교원 양성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 영역 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존 교원의 법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해 중등교원 양성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법 관련 연수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IV. 전국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현황

1.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실태

법교육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첫 단추로서 전국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교육 교육과정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기준 일반사회 전공의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사범대학은 총 16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6개 사범대학에서 편성한 법 영역 강의 및 관련 교육과정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²⁾.

먼저 각 대학별로 법 영역 강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법 영역 강의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대략 5.8개 정도의 강의를 편성하고 있다. 가장 적게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성신여자대학교로 3개의 강의가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4개, 서원대학교가 5개를 편성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가 6개의 법 영역 강의를 편성하고 있고 대구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가 7개, 강원대학교가 8개, 한국교원대학교가 9개로 가장 많은 수의 강의를 편성하였다. 이는 일반사회 전공의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국 사범대학의 평균적인 경제 영역 강의 수는 약 6.4개이다(박형준 외, 2013: 8). 일반사회 전공에서 다루는 여러 학문 영역 중 특히 법 영역에 대한 부담과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주목할 필요가 크다. 또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대학별 법 영역 강의 편성 수의 차이는 강의의 주제 및 내용으로서 다양한 법 영역을 다루는 데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예비교사들의 법교육 교사 전문성 함양 기회의 근본적인 차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사회 전공 내 다른 학문 영역과의 조정 및 담당 교수자의 확보 등을 통해 적정한 수의 법 영역 강의가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어서 전국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에 대하여 학년 및 학기에 따른 ‘편성 시기’와 ‘강의 주제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

2) 본 연구는 각 대학 홈페이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담당 교수자에 따라 실제 강의 계획 및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년 및 학기별 ‘편성 순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2. 대학별 법 영역 강의 편성 시기

각 대학별로 법 영역 강의 편성 시기를 분석한 결과, 각 대학은 주로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1학년에 법 영역 강의를 편성하고 있는 대학은 불과 7개교로, 1학년 1학기의 경우 4개교에 그쳤다. 이어서 2학년 1학기에는 11개교, 2학년 2학기에는 14개교가 법 영역 강의를 편성하고 있었으며, 3학년 1학기에는 16개교 전체가, 3학년 2학기에는 14개교가 법 영역 강의를 편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4학년에는 그 수가 다시 감소하여 1학기에는 10개교, 2학기에는 8개교가 법 영역 강의를 편성하였다. 이는 1학년이 주로 교양 강의를 중심으로 기초 소양을 쌓는 시기이고, 4학년의 경우 교육 실습과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국 사범대학의 법 영역 강의 편성 시기를 학년과 학기에 따라 비교하자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전국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편성 시기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강원대학교			○	○	○	○	○	○
경북대학교			○	○	○	○	○	○
경상대학교	○	○	○	○	○			○
공주대학교		○	○	○	○	○	○	
대구대학교		○	○	○	○	○	○	○
부산대학교					○	○	○	○
서울대학교			○	○	○	○		
서원대학교			○	○	○	○		○
성신여자대학교	○			○	○			
순천대학교				○	○	○	○	
이화여자대학교				○	○	○		
인하대학교	○		○	○	○	○	○	
전북대학교		○	○	○	○	○	○	○
제주대학교	○	○	○	○	○	○		
충북대학교		○		○	○	○	○	○
한국교원대학교		○	○		○	○	○	○

3. 대학별 법 영역 강의 주제 및 내용

각 대학에서 편성한 법 영역 강의의 주제와 내용을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법 영역의 교과내용학은 법학을 기준으로 법학개론, 헌법, 민법, 형법을 제외한 공법의 영역(형법, 행정법 등), 그리고 사회법이나 법철학 등을 포괄하는 기타법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법 영역의 교과교육학은 법학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교육론에 대한 실습 위주의 강의가 주로 해당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별 법 영역 강의의 주제와 내용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사범대학의 법 영역 강의의 주제 및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전국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주제 및 내용

대학	법 영역의 교과내용학					법 영역의 교과교육학
	법학개론	헌법	민법	형법	기타법	
강원대학교	-	헌법과 시 민교육	시민생활과 법1*	시민생활과 법2*	법사상과 시 민교육	법교육론
					사회변동과 법	법교육 연습
					시민사회와 법이념	
경북대학교	법학	-	민법과 교 육	형법과 교 육	법철학과 교 육	법학 교재연 구
	법과 사회*					
경상대학교	법 이해의 기초*	인권과 헌 법*	사사로운 생활과 민 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	사회문제와 사회법	법·인권 사례연습
공주대학교	법과 사회*	-	민법	형법	행정법	-
					사회법	
					법 생활 문 제 연구	

대학	법 영역의 교과내용학					법 영역의 교과교육학
	법학개론	헌법	민법	형법	기타법	
대구대학교	법과 사회	-	사법과 시 민교육	-	인간자원 개 발과 관리 행정	법학 교수 -학습론
					법 현상의 사회과학적 이해	법교육 세미 나
					사회법과 시 민교육	
부산대학교	법과 사회*	헌법*	민법	범죄와 법	법과 인권	법교육 교수 학습 방법론
						법과 교육
서울대학교	사회와 법률 *	시민교육 과 헌법*	-	-	청소년 문제 와 법교육	법교육 연습 *
서원대학교	법과 사회*	시민교육 과 헌법	개인생활과 법	공공생활과 법	-	법교육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 사회*	민주사회 와 헌법*	-	-	법교육과 법 사상	-
순천대학교	법과 사회*	헌법과 시 민교육	-	-	청소년과 법교육	법교육 연습
이화여자대학교	-	헌법의 이 해	사법 연구 와 민주시 민 교육	공법 연구 와 민주시 민 교육	-	법의식과 법교육
인하대학교	법과 사회*	-	-	범죄와 형 벌	행정학 입문	법교육 개론
					사회문제와 법	법교육 이론 과 사례
전북대학교	법학원론*	헌법*	민법	형법	사회문제와 법	법학 연습
					행정법	
제주대학교	법과 사회*	헌법과 시 민교육	사법과 시 민교육	공법과 시 민교육	사회법과 시 민교육	법교육 사례 연습

대학	법 영역의 교과내용학					법 영역의 교과교육학
	법학개론	헌법	민법	형법	기타법	
충북대학교	법학통론*	한국헌법	사적 생활 과 법	공적 생활 과 법	법사상과 법 생활	법교육 세미 나
한국교원대학교	법과 사회*	헌법	민법 총칙	형법 총칙	행정법	법교육
					교육 법규	법 교재론
					법학 특강	

※ *표시는 전공 필수 과목을 의미함.

법 영역의 교과내용학을 기준으로 각 대학의 강의 주제 및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학개론’ 강의를 편성하고 있는 대학은 14개교로, 대구대학교를 제외한 13개교에서 전공 필수 과목³⁾으로도 지정하고 있다. ‘헌법’을 강의로 편성하고 있는 대학은 12개교이며, 그중 5개교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별도의 헌법 강의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법학개론 강의를 통해 헌법을 교수하고 있다고 볼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법학개론’과 ‘헌법’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법학개론과 헌법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법학 지식의 기반과 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 영역에서도 핵심 내용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순천대학교의 법학개론 강의인‘법과 사회’와 성신여자대학교의 헌법 강의인 ‘민주사회와 헌법’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에 있어서 법의 기능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법적 사고방식을 배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회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법과 사회)

본 교과목의 목적은 근대 헌법의 유래와 특징에 관하여 고찰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연구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와 헌법)

다음으로 ‘민법’을 강의로 편성하고 있는 대학은 14개교이며, ‘형법’을 강의로 편성하고 있는 대학은 12개교이다. 강원대학교의 민법 강의인 ‘시민생활과 법1’과 인하대학교의 형법 강의인 ‘범죄와 형벌’의 강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해당 전공의 졸업 요건으로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법이 가지는 의의를 법의 기초 및 개인생활과 관련된 법영역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시민교육에서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시민생활과 법1)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판례와 사실 관계 조사, 형사법정의 방문의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범죄와 형벌)

기타법을 주제로 하는 강의에서는 사회법, 행정법, 법철학, 청소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의 ‘청소년 문제와 법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법교육 일반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탐색하는 강의에 해당한다.

최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 법교육 영역의 강의로서,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원인, 청소년 비행에 대응한 법교육의 이론과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다룬다. (청소년 문제와 법교육)

법 영역의 교과교육학은 법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강의이다. 공주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를 제외한 14개교가 법 교과교육론을 강의로 편성하고 있다. 대구대학교의 ‘법학 교수-학습론’과 부산대학교의 ‘법과 교육’의 강의 소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을 비롯한 공법, 사법, 사회법 등의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과 법 영역에 관한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실연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법학 교수-학습론)

법 영역 교수학습법의 습득과 실제 수업을 통한 법 영역 내용 이해의 심화를 목표 한다. (법과 교육)

법 교과교육론 강의를 편성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13개교가 3-4학년에 해당 강의를 편성하였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이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및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학년에 강의를 편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강의가 주로 편성되어 있는 4학년은 교육 실습, 교원 임용시험 준비가 이루어지는 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 교과교육론 강의의 편성이 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통한 법교육 교사 전문성의 함양

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4. 대학별 법 영역 강의 편성 순서

각 대학의 법 영역 강의 편성 순서를 앞서 분석한 주제 및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어떤 내용의 법 영역 강의를 편성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떠한 순서로 편성할 것인가 또한 예비교사들이 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익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전국 사범대학의 학년 및 학기별 법 영역 강의 편성 순서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전국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편성 순서

대학	학년	1학기	2학기
강원대학교	1	-	-
	2	시민 생활과 법1*	헌법과 시민교육
	3	시민 생활과 법2	법사상과 시민교육 사회변동과 법
	4	법 교육론 시민사회의 법이념	법교육 연습
경북대학교	1	-	-
	2	법학	민법과 교육
	3	법과 사회*	형법과 교육
	4	법학 교재연구	법철학과 교육
경상대학교	1	법 이해의 기초*	인권과 헌법*
	2	행정법 및 형사법	사사로운 생활과 민사법
	3	사회문제와 사회법	-
	4	-	법·인권 사례 연습
공주대학교	1	-	법과 사회*
	2	행정법	민법
	3	형법	사회법
	4	법 생활 문제 연구	-
대구대학교	1	-	법 현상의 사회과학적 이해
	2	인간자원 개발과 관리 행정	사법과 시민교육
	3	법과 사회	사회법과 시민교육

대학	학년	1학기	2학기
부산대학교	4	법학 교수-학습론	법교육 세미나
	1	-	-
	2	-	-
	3	법과 사회* 민법	헌법* 범죄와 법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4	법과 교육	법과 인권
서울대학교	1	-	-
	2	시민교육과 헌법*	사회와 법률*
	3	청소년 문제와 법교육	법교육 연습*
	4	-	-
서원대학교	1	-	-
	2	법과 사회*	시민교육과 헌법
	3	개인생활과 법	공공생활과 법
	4	-	법교육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	법과 사회*	-
	2	-	민주사회와 헌법*
	3	법교육과 법사상	-
	4	-	-
순천대학교	1	-	-
	2	-	법과 사회*
	3	헌법과 시민교육	청소년과 법교육
	4	법교육 연습	-
이화여자대학교	1	-	-
	2	-	법의식과 법교육
	3	사법 연구와 민주시민교육	공법 연구와 민주시민교육 헌법의 이해
	4	-	-
인하대학교	1	법교육 개론	-
	2	범죄와 형벌	법과 사회*
	3	행정학 입문	법교육 이론과 사례
	4	사회문제와 법	-
전북대학교	1	-	법학원론*
	2	헌법*	형법
	3	민법	사회문제와 법
	4	행정법	법학 연습
제주대학교	1	법과 사회*	헌법과 시민교육
	2	공법과 시민교육	사법과 시민교육
	3	사회법과 시민교육	법교육 사례연습

대학	학년	1학기	2학기
충북대학교	4	-	-
	1	-	법학통론*
	2	-	한국 헌법
	3	사적 생활과 법	공적 생활과 법
	4	법사상과 법 생활	법교육 세미나
한국교원대학교	1	-	법과 사회*
	2	헌법	-
	3	행정법 형법총칙	법교육 민법총칙 교육 법규
	4	법교재론 법학 특강	-

※ *표시는 전공 필수 과목을 의미함.

학년 및 학기별로 법 영역 강의 주제 및 내용의 편성 순서를 살펴보면 각 대학을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에 속하는 대학의 강의 편성 순서는 ‘법학개론’, ‘헌법’을 먼저 배우고, 이후 ‘민법 또는 형법’에 대해 다룬 후, 마지막으로 ‘법 교과교육론’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서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의 총 8개교가 이 집단에 해당한다. 첫 번째 집단은 법학의 위계를 따라서 법 영역 강의가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법학의 개요를 다루는 법학개론 또는 모든 법의 기준이자 근본이 되는 헌법부터, 민법 또는 형법, 기타법의 순서로 내용 영역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진다. 이후 법 교과교육론을 통해 법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한편 두 번째 집단은 첫 번째 집단의 법 영역 강의 편성 순서와 유사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편성 강의 수 및 내용 영역에 차이가 있다.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의 총 3개교가 이 집단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집단은 전국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의 평균 수에 못 미치는 3~4개의 강의를 편성한 대학들로 ‘민법 또는 형법’을 직접적인 내용 영역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법학개론 또는 헌법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법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익히고 이를 법 교과교육론을 통해 적용해볼 수는 있으나, 민법과 형법의 개별적인 내용은 예비교사 혼자서 익혀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강의 편성 수의 증대 등을 통해

사범대학 양성과정 내로 내용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집단은 법 영역 강의 편성 순서가 법학의 위계 등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의 흐름을 구성한 경우이다. 강원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의 총 5개교가 이 집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의 경우, 민법으로 시작하여 헌법, 형법, 법 교과교육론의 순서로 강의가 편성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법 교과교육론, 민법, 형법, 헌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어렵고 방대한 법학 지식을 어떠한 기준이나 방향 없이 배우는 것은 예비교사로서 법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V. 교사의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인식

문서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가 학교 현장의 법 수업 실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구체화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법교육 교사 전문성의 측면에서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면담 질문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먼저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전반'에 대한 교사의 수강 경험을 확인한 후에 '법교육 전문성의 관점에서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수강 경험 전반

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3~5개 정도의 법 영역 강의를 수강하였다. 교과내용학을 기준으로는 '민법'과 '헌법', '형법'을 주제로 하는 강의를 공통적으로 수강하였는데, 그중 형법은 사회법과 함께 하나의 강의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 및 비중은 강의별로 상이했다. 이와 함께 교과교육학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을

따로 배우기보다는 ‘수업 시연’을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수강 경험 전반에 대하여 교사들의 수강 이유 및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법 영역 강의 수강 이유

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법 영역 강의를 수강한 이유에 대해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학별로 교육과정 설계상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사범대학 양성과정을 거친 모든 예비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 따라서 어떤 강의 주제 및 내용을 어떠한 순서를 따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차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될 예비교사들의 법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법 강의를 수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고 (중략) 이외에 큰 이유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사 3)

2) 법 영역 강의 전반에 대한 평가

교사들은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한편, 대체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크게 ‘강의 구성 자체’와 ‘교원 임용시험 준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법 수업 실행’의 측면에서 법 영역 강의 전반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의 구성 자체

교사들은 강의 구성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내용 이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 원인으로 ‘법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재’, ‘체계성의 부족’ 그리고 ‘법 내용 자체의 방대한 양’을 꼽았다.

저는 대학 법 강의를 들을 때 고등학생 때 배웠던 법과 정치 지식밖에 없었던 터라 강의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중략) 고등학교랑 대학교 사이에 난이

도 격차가 너무 컼고 제가 법과 정치를 배웠던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또 1년 동안 안 하다가 대학교에서 다시 하려다보니 그 지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 용어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도 거의 대부분을 몰랐던 터라 (교사 1)

실제로 강의 전반에 대해서는 법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제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나 목차를 좀더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법을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2)

저 역시 대학교 법 강의를 들을 때 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라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법 과목 자체가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더욱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사 5)

② 교원 임용시험 준비

교사들은 교원 임용시험 준비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성의 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룸’, ‘평가 방식의 차이’ 그리고 ‘목적상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법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나 단원, 개념들이 임용고시와 바로 연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3)

대학 강의는 임용시험이라는 별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중략) 그래서 임용을 준비할 때 인터넷 강의에 많이 의지했고 (교사 1)

③ 학교 현장에서의 법 수업 실행

한편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법 수업 실행과 관련하여 ‘적용의 가능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판례의 활용성’, ‘교과서 밖의 지식 학습’ 그리고 ‘수업 시연의 기회’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학교 현장 적용에서 보면 법 강의에서 판례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했던 과제 수행 경험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 평가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어느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7)

저는 대학생 때 배운 내용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례를 분석한 과제를 수행평가로 활용하고 있고 판례 비평 수업을 통해서도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노동법 관련해서 단순히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조정이나 긴급 중재와 같은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구성이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2)

법 교육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강의였기에 저는 모의 헌법재판 활동 중심의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직접 수업 시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학교 현장에서 법 수업 실행 시 수업 구성에 있어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6)

2. 법교육 교사 전문성과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법교육관’ ‘법교육 내용’, ‘법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법교육 교사 전문성을 정립함에 있어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이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절의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졌다. 법교육 교사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법교육관과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교사의 법교육관은 크게 목표와 평가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목표에 대한 법교육관에 대해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민주 시민성의 구성 요소로서 법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목표에 있어 이러한 법교육관을 정립하는데에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부합하지 않았다는 다수의 응답이 있었다. 오히려 ‘법적 지식의 획득에만 치우친 강의’로 인해 사회과교육의 궁극적 목표로서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는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교원 양성기관의 법 강의는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략) 법을 공부하는 기본 자세나 방법을 알려주셨지 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서 민주시민성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법을 탐구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셨는데 수업지도안이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없었죠. (교사 8)

중등교원 양성 기관의 법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학교 현장의 법 수업 목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6)

한편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법교육관에 대하여 지필 평가는 ‘법적 지식 획득’에의 초점을 두고, 수행평가는 ‘법적 지식의 실생활 적용’을 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평가에 있어 이러한 법교육관을 갖게 된 데에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했다. 예비교사로서 사범대학 양성과정에서 ‘암기 위주의 평가를 받았던 것’과 함께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강의 부재’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법적 지식 측정 위주의 평가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무래도 교원 양성기관에서 진행된 평가도 암기 위주의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사 5)

법 강의가 이런 평가 방식을 정립하는 데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에서 딱히 법 과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들이 수행평가 항목을 만들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차원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교사 4)

그러나 동시에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에서 ‘판례 분석 및 비평’ 등을 배우고 이를 적용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응답도 있었는데, 여전히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사범대학 양성과정이 아닌, 동료 교사나 연수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이는 사범대학의 법 영역 강의의 개선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법교육에서의 평가 방법 및 자료’ 또한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판례를 저희에게 설명해주시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물으셨던게 지금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1)

교원 양성기관의 영향을 생각해보면 판례 비평이 저에게도 의미있게 와닿았고 매 법 수업마다 해왔던 과제이기에 판례 비평을 많이 영향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 비평 외에도 더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좀 더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 2)

2) 법교육 내용과 사법대학 법 영역 강의

다음으로 법교육 내용에 대해 교사들은 크게 3가지의 기준을 따라 중요도를 구분하고 있었다. ‘법의 위계에 따라 헌법에 중요도를 부여’하거나,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민법에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법 체계 이해를 위해 법학 개론에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교사별로 구체적인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가 1-3순위에 헌법, 민법, 법학개론을 두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1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법이 왜 있는지, 민주주의랑 관련해서 법 이념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 3)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헌법보다 민법이나 형법에 훨씬 더 호기심을 많이 보이고 재미있어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법이나 형법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도 헌법이 먼저 나오고 민법, 형법 부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 4)

저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헌법, 형법, 기타법, 법학개론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으로 민법에서는 특히 부동산, 계약, 불법 행위, 친족 상속법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교사 5)

저는 법학개론에 대한 내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나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사 7)

그리고 다수의 교사들은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가 이러한 법교육 내용의 중요도를 부분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았다. 헌법, 민법, 법학개론이 강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도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의 편성’이며, 후순위를 할당받기는 했으나 가치가 있는 ‘형법, 노동법 등에 대한 강의는 부재’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딱히 이러한 순위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수업 구성이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사3)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이런 중요도를 반영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민법, 형법에 관한 강의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8)

아이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내용의 중요성을 판단해보면 사실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은 노동법이거든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노동법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2)

3) 법교육 방법과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

마지막으로 법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교사들은 ‘강의식 수업을 중심으로 하되, 활동형 수업을 시도’한다고 응답하였다. 강의식 수업이 주가 되는 이유는 복합적이었는데, 우선 ‘정확한 법적 지식 습득의 선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강의식 수업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동시에 ‘수업 시수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활동형 수업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다.

요즘에는 학생 중심 수업이다 뭐다하면서 강의식 수업이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 과목을 가르칠 때에는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 4)

지식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법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 없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의식 수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업 시수의 문제도 있는데

특히 정치와 법이 어떤 학년에 편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2학년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당장 3학년은 수능을 앞에 두다 보니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사 3)

아무래도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회과 자체의 수업 시수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1학년은 주당 3시간, 2학년은 주당 2시간이기 때문에 이 2시간 동안 법뿐 아니라 다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서 수업 내용을 부분부분 잘라서 다루게 됩니다. 일단 수업 시수가 적은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7)

이게 진도도 나가야 하고 문제를 풀고 수능을 준비하다보니 강의식 수업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 8)

한편 앞서 논의했던 평가에 대한 법교육관과 같은 맥락에서 교사들이 이러한 법교육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은 사범대학 법 영역 강의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판례 분석 및 비평’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법교육 방법에 대한 강의 부재’로 인해 사범대학의 법 영역 강의만으로 활동형 수업을 구상하거나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래도 교원 양성기관에서의 법 강의도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을 했다보니까 이런 점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사 5)

대학교 법 강의도 강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법 수업에서 활용할만한 수업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교사 1)

대학 강의가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일정 연수에서 실제적인 내용이나 국제법 관련 강의를 들었던 게 도움이 됩니다. (교사 8)

교과서와 문제집, 출판사 사이트의 자료, EBS 강의 및 교재, 유튜브 영상(뉴스, 법 정 드라마 또는 영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합니다. 학부 때 수강한 법 관련 강의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교사 6)

3.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교사들은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사범대학 법교육 교육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의 구성 및 내용의 체계화’, ‘교원 임용시험과의 연계 강화’, ‘법교육 방법 관련 강의 편성’, ‘현행 교과서 검토 및 분석 강의 편성’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는 좀 체계적인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임용고시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대비하는 과정에서 법 교육에 대한 공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기준점을 임용고시로 정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강의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임용고시 기출 문제 기반의 주제 선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입생이 처음 입학했을 때 법 교육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 3, 4학년을 통틀어 봤을 때 법 교수법 자체에 대한 강의는 없었으니까 1, 2학년 때는 임용고시 준비랑은 거리가 있기도 하고 이때 고등학교 법 교육 수준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실행해볼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강의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듀테크가 아예 강의로 나오기도 한다는데 이러한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3, 4학년 때 그 내용들을 정리하며 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가 구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 3)

저는 법 강의에 대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 교육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용고시에서도 가장 의외성 있게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을 좀 체계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뿐 아니라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법 지식이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2)

2차에서 수업 실연이 있다보니까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실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1)

저는 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법 강의의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고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효과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활동 중심의 강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업을 구상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좀 더 실생활과의 관련성이 높고 난이도가 더 쉬우면서도 적절한 판례를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 5)

저는 그 법 강의가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법 개론에 해당하는 영역을 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교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별 각론을 좀 내실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기관 재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따로 교재 연구를 안해도 될 정도로 교과서에 대한 분석,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그 교과서의 부족한 면이나 내용 요소에 관해 적절한 판례나 시의성 있는 자료를 구상해보는 활동을 한 학기 정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7)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강의 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강의 내용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중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교 현장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여 추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는 경험이 더해진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6)

VI. 논의 및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제언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법교육을 담당하는 데 있어 교사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실상 본 연구는 법교육 전문성을 규명하는 데 천착하진 않았다. 본래 교사 전문성이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므로 이를 단편적으로 정의내리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법교육 전문성과 관련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그 자체로서 법교육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대학 법교육 교육과정과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전문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하고자 했다. 교사들은 법교육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내용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의 근간이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지식에서 출발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가지는 본질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법교육 교사 전문성이란 기본 내용 지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활용에 대한 종합적 역량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교육에서의 교사 전문성은 법학자나 법률 전문가의 역량과는 구분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기본 내용 지식과 교수·학습적 역량이 상호 유기적으로 전문성을 구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사범대학 교사 양성과정에서도 소위 법 교과 교육학 영역과 같은 실천적 강의가 분명 확보 및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이 인식하는 본인의 법교육 전문성 실태는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교사들은 사범대학 양성과정을 통해 법교육에 대한 전문성 함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동시에 부족함이나 무용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양성과정에 대한 한계나 아쉬움에 대한 토로는 현재 교사 본인의 전문성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부족한 전문성은 법학의 학문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만큼 법학의 내용 체계는 방대하고, 사법이나 공법과 같은 분류에 따라 법리의 적용 체계 자체가 상이하기도 하다. 이를 모두 전문적으로 익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비단 현장 교사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라 할지라도 본인의 전문 분야 외 모든 영역에 걸쳐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법학 학문 특성에 기인한 근본적, 구조적 문제라 볼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 교사 양성과정에서 법 영역 강의가 충분히 편성·개설되지 못하고, 현장에 배출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법 영역의 범위는 생각 외로 넓어서⁴⁾ 전문성 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충분히 배우지도 못한 채 매우 넓은 법 영역을 개인적 노력과 역량만으로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셋째, 법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현행 사범대학 교사 양성과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앞서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었기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법 영역 강의의 편성·개설되는 비중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이로 인해 방대한 법학의 내용 영역을 제대로 관장하지 못한다는 점, 기초 지식이 부족한 채 입학한 예비교사가 전문적인 내용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점, 법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하여 중등교사 양성 맥락과 동떨어진 점 등이 제기되었다.

4)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대표적인 법뿐만 아니라 법철학, 노동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환경법, 소비자 관련 법, 국제법과 같은 방대한 내용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법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 영역 강의 자체의 편성, 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양적 측면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수업에서 방대한 법학 영역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법대학 양성과정 법 영역 강의의 양적 증대가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학사행정 측면에서는 졸업 이수학점의 고정 범위 내에서 법 영역 강의만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하여 교원자격검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⁵⁾에서는 법 영역에 대하여 ‘법과 사회(또는 법학)’이라고만 표기하고 있어 법 영역 강의의 양적 부족을 축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에서 법 영역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 영역 강의의 양적 확보에 더하여 법 영역의 강의 내용에 대한 미세 조정, 즉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 교수되는 법 영역에 대해서는 양성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성과정에서의 법 강의가 법학의 학문 분류 체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헌법, 민법, 형법만을 다루거나 아예 민법이나 형법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하여 법학의 기초부터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하되, 여러 가지 사회법이나 법철학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강의 내용을 4~5개 강의에 적절히 안배하여 강의 내용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각 대학별 자율적 개선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칭 ‘사법대학 법 영역 교수협의회’ 등을 조직하여 법교육 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접근해 보았으나,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개념화하고 하위 구성 요인을 규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법 영역의 교과교육학에 대한 강한 요구가 확인되는 만큼, 법교육학을 이론화, 체계화하기 위한 법교육 및 법학 연구자

5)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23. 3. 29.] [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 3. 29., 일부개정]의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들의 참여와 협업이 요청된다. 오늘날 교과교육학적 담론은 국어, 일반사회, 지리, 역사 등의 사범대학 학과 단위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교수되는 내용으로서 일반사회라는 실체는 무엇인가? 시민적 역량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법, 정치, 경제, 문화, 사회와 같은 특정한 영역의 학문과 생활 세계의 경험에 터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법 영역에서의 교과교육학적 고민과 성찰은 상위의 교과교육학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변모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법교육에서의 교사 전문성 논의는 결국 법교육의 본질관, 법교육의 교과 교육학적 정체와 맞물려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대현(2006). 사회과수업 컨설팅 및 내용 교수법(PCK) 연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6-18-2.
- 김순희(2008). 사회과 법교육을 위한 교사교육-법교육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5(3), 73-92.
- 김자영·곽한영(2009). 교원 연수과정에서 법교육의 현황에 대한 연구 -중등사회과 1정연수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48(2), 1-16.
- 박성혁·배화순(2009).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법교육연구*, 4(1), 103-122.
- 박형준·한경동·장경호(2013). 사범대학 경제교육 관련 교육내용 분석. *경제교육연구*, 20(3), 1-36.
- 이대성(2009).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법교육연구*, 4(1), 155-177.
- 이종훈·표현덕(2018).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5), 1-320.
- 이혁규(2011). 교사란 무엇인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편), 나눔과 성장이 있는 수업 되돌아보기(pp. 17-27). 서교연 2011-30.
- 임경수(2012). 중등 사회과 법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프로그램 분석과 개선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5(1), 47-70.
- 전제철(2010). 초중등 사회과 법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법교육연구*, 5(2), 133-158.
- 차경수·모경환(2008). *사회과교육*(제1판). 서울: 동문사.
- McKenzie, G. R. (1986). Learning and instruction. In V. A. Atwood(Ed.),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Research as a guide to practice*,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Bulletin No. 79, 119-136.
- Stanley, W. B. (1991). Teacher competence for social studies. In Shaver, J. (Ed.),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pp. 249-265).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2.
-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한국법교육학회(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 08826)

TEL: 010-7275-3810

E-mail: lawedu@hanmail.net

간사: 김경래·이수진·권한님

홈페이지: 한국법교육학회 – lawedu.org

논문투고 홈페이지 – jams.lawedu.or.kr

